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720
----------	--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1월 25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법률의 근거 없이는 조례로 새로운 의무 관계를 수반하는 ‘자료제출 요구’ 를 규정하기 어려워 피요청자에게 자료제출 여부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‘자료제출 요청’ 으로 변경하고, 주민의 권리·의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위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“자료제출 요청을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행” 할 수 있도록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자료제출 요구를 자료제출 요청으로 변경하고, 이를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의2).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의2(자료제출 요청 등) ① 시장은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〈수정안 조문대비표〉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신 설>	<p>제7조의2(자료제출 요구 등)</p> <p>① 시장은 체계적인 소상 공인 지원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, 자치단체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,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서울신용보증재단,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7조의2(자료제출 요청 등)</p> <p>① 시장은 체계적인 소상 공인 지원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자료제출 요청 등) ① 시장은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7조의2(자료제출 요청 등) ① 시</u> <u>장은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과</u> <u>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</u> <u>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</u> <u>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</u> <u>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</u> <u>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</u> <u>장,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</u> <u>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</u> <u>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</u> <u>출 요청을 서울신용보증재단 등</u> <u>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</u> <u>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</u> <u>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</u> <u>서는 안 된다.</u></p> <p><u>④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</u> <u>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</u> <u>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개인정</u> <u>보 보호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</u> <u>다.</u></p>